

의안번호	제 674 호
의 결 연 월 일	2014년 6월 일 (제330회)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14년 6월 11일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74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4년 6월 11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제도가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, 충청북도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별 위원정수를 조정하며,
- 나. 조직변동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직무를 조정하고,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·부위원장 사고 시 직무 대행 순서를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제도 일몰 관련 규정을 삭제함
(안 제1조, 제4조제2항, 제5조)
- 나.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함(안 제2조제6호)
- 다. 상임위원회의 소관직무에 신설조직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함(안 제3조)
- 라. 위원장·부위원장 사고시나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 직무 대행순서를 조정함
(안 제8조제2항, 제11조4항)
- 마. 일부 조문을 “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맞게 정비함
(제명, 안 제7조, 제9조, 제12조의2제3항, 제4항, 제13조)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여부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”로 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7명”을 “7명 이내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여성정책관, 기획관리실, 보건복지국, 충북도립대학, 보건환경연구원”을 “여성정책관, 규제개혁추진단, 기획관리실, 보건복지국, 충북도립대학, 보건환경연구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바목 중 “충북지식산업진흥원”을 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“교육청(교육·학예)”을 “충청북도교육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에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

② 소속 위원회를 달리하거나 중도 사퇴에 따라 새로 보임되고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의원의 자격심사”를 “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임명될 때까지는 위원중”을 “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
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위원의 선출과 개선(改選))”을 “(위원의 선임과 교체
선임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선출”을 “선임”으로 하며, 같은 조
제2항 중 “상임위원중에서 선출”을 “상임위원 중에서 선임”으로 하고,
같은 조 제3항 중 “임기중 개선”을 “임기 중 교체 선임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4항 중 “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
출석위원 중”을 “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
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
그 중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2제3항 중 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”를 “결격사유에
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“그 밖의”를
“그 밖에”로, “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”을
“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사항외의”를 “사항 외의”로, “회의의 운영·의사등에”를
“회의의 운영·의사 등에”로, “회의규칙”을 “「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」
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~ 5. (생략)</p> <p>6. 교육위원회 <u>7명</u></p> 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정책복지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여성정책관, 기획관리실, 보건복지국, 충북도립대학,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나.~ 다. (생략)</p> <p>바. <u>충북지식산업진흥원</u> 운영에 관한 사항</p>	<p><u>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에 따라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<u>7명</u> 이내</p> 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여성정책관, <u>규제개혁추진단</u>, 기획관리실, 보건복지국, 충북도립대학, 보건환경연구원 -----</p> <p>나.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바. <u>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3.~ 5. (생략) 6. 교육위원회 가. <u>교육청(교육·학예) 소관</u> 에 속하는 사항</p> <p>제4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 (생략)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 <u>다만, 교육의원이 의장이 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u></p> <p>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<u>상임위원은 임명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교육의원은 해당 교육위원회에서 임기종료까지 재임한다.</u> 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</u> ③ <u>소속 위원회를 달리하거나 중도 사퇴에 따라 새로 보임되고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	<p>3.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가. <u>충청북도교육청</u> ----- -----</p> <p>제4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 <u><단서 삭제></u></p> <p>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<u>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</u> ② <u>소속 위원회를 달리하거나 중도 사퇴에 따라 새로 보임되고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특별위원회) ①~② (생략) ③ <u>의원의 자격심사</u>, 윤리심사,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</p>	<p>제7조(특별위원회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</u>, ----- -----.</p>
<p>제8조(특별위원회 위원장) ① (생략) ② <u>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위원중</u>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8조(특별위원회 위원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</u> 원이, <u>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</u> -----.</p>
<p>제9조(위원의 선출과 개선(改選))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<u>선출</u>한다.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<u>상임위원중에서 선출</u>한다. ③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<u>임기중 개선</u>할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.</p>	<p>제9조(위원의 선임과 교체 선임) ① ----- ----- <u>선임</u>----- . ② ----- --- <u>상임위원 중에서 선임</u>한다. ③ ----- ----- <u>임기 중 교체 선임</u>-----.</p>
<p>제11조(부위원장) ①~③ (생략) ④ <u>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</u>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11조(부위원장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</u> 의원이, <u>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</u>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의2(위원회의 전문가 활용) ①~② (생략)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될 자문위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. ④ 위촉된 자문위원의 직무내용과 수당액, <u>그 밖의</u> 필요한 사항은 <u>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</u>을 준용한다.</p> <p>제13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<u>사항외의</u>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·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회의규칙</u>을 준용한다.</p>	<p>제12조의2(위원회의 전문가 활용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사람-----. ④ ----- -----, <u>그 밖에</u> ----- -- 「<u>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</u>」을 준용한다.</p> <p>제13조(준용규정) ----- --- <u>사항 외의</u> ----- 운영·의사 등에 ----- ----- 「<u>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54조(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) 제48조제1항, 제52조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선거(이하 이 조에서 "의장등의 선거"라 한다)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개정 2011.7.14.>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제4조(교육위원회의 설치) 시·도의회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(이하 "교육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[법률 제10046호(2010.2.26)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]

제5조(교육위원회의 구성 등) 교육위원회는 시·도의회의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7장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(이하 "교육의원"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되,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(교육의원이 꺾원되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). 이 경우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는 별표 1과 같다.

[전문개정 2010.2.26.]

[법률 제10046호(2010.2.26.)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]

제17조(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) ① 교육위원회 및 시·도의회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.

[법률 제10046호(2010.2.26.)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]

부칙 <법률 제10046호, 2010.2.26>

제2조(유효기간 등) ① 제2장, 제24조제2항 및 제7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사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안건,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에 따라 시·도의회 내에 설치되는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된다.